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23. 1. 11 선고 2022가단10813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정훈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안상원

피 고 B

변 론 종 결 2022. 12. 14.

판 결 선 고 2023. 1. 11.

주 문

1. 피고와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22. 6. 28.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C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22. 6. 29. 접수 제11088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에 대한 채권자이고, 피고는 C의 아들이다.

나. D는 2010. 7. 30. 인천지방법원 2010가단68670호로 C를 상대로 하여 투자약정금의 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1. 2. 25. ‘C는 D에게 31,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1. 2.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2011. 3. 12. 확정되었다.

다. D는 2022. 6.경 이 사건 판결에 기초한 채권(이하 ‘이 사건 판결금채권’이라 한다)을 원고에게 양도하였고, 원고는 D로부터 채권양도통지 권한을 위임받아 2022. 6. 16. C에게 위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하였다.

라. C는 2022. 6. 28.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증여하였고(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 한다), 2022. 6. 29.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마.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 당시 C는 이 사건 부동산 외에는 별다른 적극재산이 없었고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이 법원의 E기관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결과, 이 법원의 의성군에 대한 과세정보제출명령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 이전에 원고가 양수한 이 사건 판결금채권이 이미 발생한 상태였으므로, 이 사건 판결금채권은 이 사건 증여계약에 대한 사해행위취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2) 피고는 원고가 D로부터 이 사건 판결금채권을 양수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D에게 지급한

양수대가가 얼마인지를 밝히지 않고 있어 실제로 이 사건 판결금채권을 양수하였다고 볼 수 없고 원고와 D 사이의 채권양수도계약은 가장매매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채권양수도계약은 채권의 양도·양수에 관한 당사자들의 의사합치만 있으면 성립하여 그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고 반드시 그 대가의 수수가 있어야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며, 을 제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기재만으로는 원고와 D 사이의 채권양수도계약이 가장매매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또한 피고는 이 사건 판결금채권이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 판결금채권은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된 2011. 3. 12.부터 10년의 소멸시효가 진행되고(민법 제178조 제1항, 제2항, 제165조 제1항), 원고의 이 사건 소는 그로부터 10년이 경과된 후인 2022. 7. 11.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나, 한편 갑 제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D는 소멸시효기간 만료 전인 2011. 4. 19. 이 사건 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C의 보험금채권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2011타채12552호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사실, 위 명령은 2011. 4. 22. 제3채무자인 F 주식회사, G 주식회사, H 주식회사에 각 송달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로써 위 소멸시효는 중단되었다 할 것이고, 시효의 중단은 승계인, 즉 이 사건 판결금채권을 양수한 원고에게도 그 효력이 미치므로(민법 제169조), 결국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C가 위 압류 및 추심명령 이전인 2011. 3. 14. F 주식회사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음으로써 보험계약이 이미 실효되었으므로 위 채권압류는 무효라고 주장하나, 설령 C와 F 주식회사 사이의 보험계약이 이미 실효되었다고 하더라도, C가 또 다른 제3채무자인 G 주식회사, H 주식회사와 각 체결한 보험계약까지 실효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고, G 주식회사, H 주식회사를 각 제3채무자로 한 채권압류의 효력이 존속하는 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그대로 유지되는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또한 피고는 C가 이 사건 판결금채권의 성립 후 면책결정을 받았으므로 C는 이 사건 판결금채권을 변제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갑 제7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C가 인천지방법원 2010하단7124, 2010하면7124호로 파산 및 면책신청을 하여 2011. 6. 30. 파산선고를, 2011. 8. 31. 면책결정을 각 받았고, 위 면책결정이 2011. 9. 15. 확정된 사실은

인정되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C는 D를 상대로 이 사건 판결금채권에 기한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하는 청구이의 소를 제기하였다가 항소심(인천지방법원 2012나20970)에서 이 사건 판결금채권은 C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청구권에 해당하여 위 면책결정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는 이유로 패소 판결을 받아 그 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판결금채권에는 위 면책결정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나. 사해행위의 성립 및 사해의사

1) 채무자의 재산이 채무의 전부를 변제하기에 부족한 경우에 채무자가 그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무상양도하거나 일부 채권자에게 대물변제로 제공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행위는 사해행위가 되는 것이다(대법원 1998. 5. 12. 선고 97다57320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C가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증여한 것은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가 되고,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C의 사해의사 또한 인정할 수 있다.

2) 피고는 C가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할 당시 피고의 자금으로 매매대금을 지급하였고 단지 효도 차원에서 C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만 마쳐두었다가, 이 사건 증여계약을 통하여 그 소유명의를 진정한 소유자인 피고로 변경한 것일 따름이므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갑 제1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C는 2021. 9. 27. 이 사건 부동산의 공유지분권자인 I, J, K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한 사실, C는 2021. 10. 22.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위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와 같이 C의 명의로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친 이상, 설령 피고의 주장과 같이 그 매수자금의 출처가 피고라고 하더라도 이를 피고의 C에 대한 매수자금의 증여로 평가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등기부의 기재와 달리 이 사건 부동산의 법률상 소유자가 처음부터 피고였다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근거가 없으며(피고의 주장을 C는 단지 명의수탁자의 지위에 있었다는 취지로 선행하더라도, 실제로 그러한 명의신탁약정이 체결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이 사건 증여계약으로

인하여 C는 책임재산이 없는 무자력 상태가 되었으므로 이 사건 증여계약은 C의 채권자인 원고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취소되어야 하고,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C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22. 6. 29. 접수 제11088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기범

별지